

2026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(4, 5개월) 모집

RISE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(4, 5개월)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* 현장실습이란?

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론의 적용,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.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학교가 아닌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

(1일 8시간/주 5일 실습 진행, 자세한 실습 시간 및 일정은 기관별 상이)

1. 모집대상

가. RISE 사업단 참여 학과(1학년~4학년) 재학생

나. 신청 가능 학과

- 식품영양학과, 한약학과, 한의학과, 간호학과, 경찰행정학과, 물리치료학과, 소방방재학과, 아동사회복지학부, 응급구조학과, 재활상담학과, 수학교육과, 군상담심리학과, 유아특수교육과, 작업치료학과, 체육학과, 특수교육과, 군사학과, 수소에너지공학과, 전기자동차공학부, 정보보안학과, 약학과, 제약공학과, 국어교육과, 스포츠지도학과, 조경학과, 태권도학과, 미디어영상학과, 호텔외식조리학과

2. 일정

신청기간	2026. 07. 13.(월) ~ 2026. 08. 07.(금)	
O T	2026. 08. 19.(수) 예정	
실습기간	4개월	2026.09.01. ~ 2026.12.31. 중 80일 이상 실습 의무
	5개월	2026.09.01. ~ 2027.01.29. 중 100일 이상 실습 의무 *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일정으로 인해 2개월 신청불가
보고서 제출	실습 종료 후 7일 이내	
학점인정/지원금지급	2027. 2. 지급 예정	

3. 모집 유형 및 지원 사항

모집유형	실습기관 → 학생 지원사항	학교 → 실습기관 지원사항
표준현장실습 (Co-op)	*최저임금의 100%이상 지급 월 2,156,880원 이상 학생에게 지급	*실습기관이 대학에 청구할 경우 최저임금의 25%를 실습기관에 지원 월 539,22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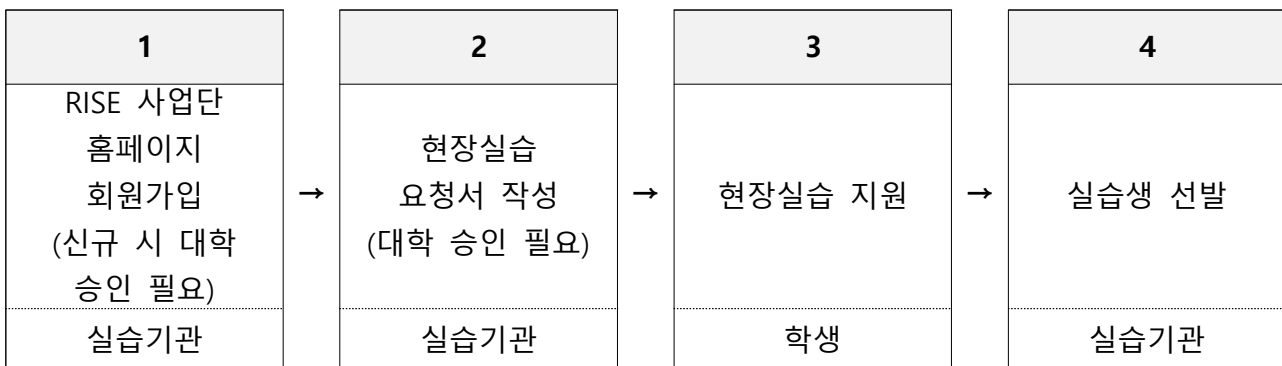
- * 실습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필수(4대 보험 중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가입 의무 아님)
- *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에 세금 미부과(비과세,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)
- * 실습기관의 회계 상 학생에게 75% 이상 지급이 어려운 경우, 학생에게 직접 25%를 지원할 수 있음

4. 현장실습 교과목 및 학점

구분	4개월	5개월
학점	전공선택 15학점	전공선택 18학점
수강신청	실습 해당학기 시작 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신청 진행	
등록금	한 학기 등록금	

5. 신청 방법

- 실습기관: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홈페이지 (<https://rise.woosuk.ac.kr/main.do>) 회원가입 후 기업 로그인 → 현장실습지원센터(063-290-1934)로 승인 요청 → 현장실습 요청서 작성
- 학생: 우석대학교 포털 로그인 → RISE사업단 홈페이지 → 현장실습 신청



6. 현장실습 진행과정



7. 참고 사항

- 가. 실습기관-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, 현장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
- 나.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외 교과목 수강 신청 불가(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)
- 다. 현장실습 진행 중 다른(부서, 기관 등) 현장실습 진행 불가
- 라.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은 학과 졸업시험 등을 별도로 통과해야 하므로 해당 학과에 일정 등은 학과에 개별 문의 필요
- 마. 현장실습은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
- 바. 지원 불가능한 경우
 - 타 부서, 기관 등의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음
 - 중복지원을 받을 시 지도교수 책임하에 지원금 전액 환수

8. 실습기관 조건

- 가. 학생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관(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)
- 나. 학생의 보건, 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
- 다.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관
- 라. 1일 8시간, 1주당 5일 실습을 필수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(점심시간 1시간은 실습 시간에서 제외)

9. 지원제외 현장실습 –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은 지원 불가

- 가. 「선박직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승선실습
- 나.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실습
- 다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
- 라.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영양사현장실습
- 마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현장실습
- 바.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의료 교정 운영학교 등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의무 실습 교육과정 및 「의료법」, 「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등에 따른 보건 · 의료 인력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 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 실습은 적용 제외

10.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

- 가.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
- 나. 학점 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(1일 8시간, 1주 40시간 미만)
- 다. 학점 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라. 현장실습 중 다른(부서, 기관 등) 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

[문의]

RISE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

- 전화: 063-290-1934

- 메일: shootwon@woosuk.ac.kr